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60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재산세 2,764,040원, 지방교육세 41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2. 설립되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회관 수탁운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설 설치 · 운영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 운영사업, 기타 법인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2. 7. 사회복지관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①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 116㎡, ② 같은 동 [redacted]대 486.6㎡, ③ 같은 동 [redacted] 대 20.2㎡, ④ 같은 동 [redacted]대 17.4㎡, ⑤ 같은 동 [redacted] 대 113.1㎡(이하 ① 내지 ⑤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26.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분 재산세 2,764,040원, 지방교육세 414,7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농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애인 직업지도 및 적응훈련과 사업노인일자리 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②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복지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6, 을 3,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회복지관이 인천 동구 송림동 193-1 지상 건물로 이전되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텃밭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토지가 쓰레기 등으로 방치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9. 2.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등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바 있다.

○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사실상 방치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3.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Green [redacted]도시농장'이라는 제목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진행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역 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텃밭 형태로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채소류를 경작하는 종합복지관 체험실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생활환경개선사업만을 두고 2014년도 재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14. 6. 1.까지 원고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4. 6. 2. 및 2014. 8. 25. 2번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2개동이 설치되어 있고 호박 등 농작물이 일부 심어져 있으나, 인근주민들이 무상으로 경작하거나 원고로부터 사업위탁을 받은 지역복지센터 우리동네가 도시농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2014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redacted]교실 텃밭일지'라는 도시농장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위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2014년도 송림농장(갑 6)에 위 사업의 대상자,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진행경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